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 (2022. 11. 30.)

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최 국 모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2-119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5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(금)

2. 제출사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 또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고,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 동의안을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대상: 한국지방세연구원
- 나. 출연의 필요성
 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 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<한국지방세연구원>에 법정 출연금 출연
- 다. 출연금: 20,212천원

4. 관계법령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

5. 검토보고

-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(出捐)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.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는 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고, 출연금의 결정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발전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.
- 또한,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경우,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<한국지방세연구원>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 관 계 법 령 】

<지방재정법>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<지방세기본법>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-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<지방세기본법 시행령>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